

2009. 1.~2.

대법원 공정거래사건 판결 요지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 노경필

- 대법원이 2009년 1월부터 2월까지 선고한 공정거래 관련 판결로는, 지하철 7공구 연장공사 입찰에서 6개의 건설회사가 입찰담합한 사건과 상주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관한 입찰담합 사건, 그리고 충주시 임도구조개량사업에 관한 입찰담합 사건 등이 있다. 이 사건들은 대부분 쟁점들에 대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가 있거나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어서 모두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었다.

- 지하철 7공구 연장공사 입찰담합 사건 : 대법원 2009. 1. 30. 자 2008두21812 판결, 및 2009. 2. 12. 자 2008두18106, 2008두18113, 2008두21188, 2008두22075 판결 (상고기각)

[사안 및 쟁점]

- 6개 건설사의 입찰 담당 직원들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입찰에서 상호 간의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각자 1개 공구의 입찰에만 참가하기로 합의하고, 각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당 컨소시엄의 대표자로서 합의에서 정한 해당 공구의 입찰에만 참가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6개 건설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 6개 건설사들은 각자 원고가 되어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 6개 건설사 모두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었다.

※ 「경쟁저널」 제143호부터 '대법원 판결 다이제스트'의 필자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인 노경필 판사로 변경되었습니다. 필자의 요청에 의해 본문 중에는 원고 및 피고 등 소송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습니다.

- ① 경쟁제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 ②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5.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2004년 고시')에서 "낙찰이 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고 한 규정은 비례·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주장
- ③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계약금액은 컨소시엄의 지분별 계약금액을 의미한다는 주장
- ④ 위와 같은 담합행위는 2004년 고시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 ⑤ 과징금 산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는 주장

[대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심리불속행 종결).

■ 상주시 하수관거정비사업 입찰담합 사건 : 대법원 2009. 1. 15.자 2008두20734 판결 (상고기각)

[사안 및 쟁점]

- A회사와 B회사는 상주시 하수관거정비사업 입찰에 A회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B회사는 형식적 경쟁자로 하여, A회사의 컨소시엄은 고시금액의 92.6%, B회사의 컨소시엄은 고시금액의 95.9%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입찰절차에서 A회사의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에 대해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고, A회사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원심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고이유로 삼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7.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5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중 사유로 삼고 있는 '이사'나 '고위 임원'의 의미가 반드시 '상법상 등기이사'에 한정되지는 않는다는 주장

- ② 원심은, 이 사건 과징금 액수가 원고가 얻은 이익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큰 금액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담합으로 원고가 직접적으로 취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적 이득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과징금 액수는 과다하지 않다는 주장

[대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이유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심리불속행 종결).

□ 충주시 임도구조개량사업 입찰담합 사건 : 대법원 2009. 2. 12.자 2008두21348 판결 (상고기각)

[사안 및 쟁점]

- 공정거래위원회는 충주시 임도구조개량사업 입찰에서 그 입찰에 참가한 산림조합 사이에 A조합이 낙찰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그 합의에 참여한 A 조합을 포함한 산림조합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 이에 대하여 A조합을 비롯한 산림조합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심은 A조합을 포함한 산림조합이 입찰담합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는 원고들에게 승소판결을 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이유로, 원심 판단에는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심리불속행 종결).